

Who Operates K-SOX Program?

2019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Contents

Key Takeaways	2
1. K-SOX*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3
2.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6
3.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8
4. K-SOX 평가 아웃소싱	9
별첨. 조사 대상 기업 구성 및 업종별 주요 결과	11

*K-SOX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국의 Sarbanes-Oxley Act(2002, 이하 'SOX')에서 규정하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OFR)'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라는 의미에서 K-SOX라고 지칭함

Key Takeaways

124개사 대상 설문 진행(자산 2조 이상 97개사, 5천억 이상 2조 미만 21개사, 5천억 미만 6개사)

K-SOX 조직의 설계

K-SOX 담당조직의 과반수 이상은 평균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 조사대상 회사 중 K-SOX 담당조직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73개사(58.9%)였으며, 19개사(15.3%)는 조직을 설계중이라고 응답
-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한 73개 회사 중 39개사(53.4%)가 K-SOX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기존의 재무조직 등을 활용
- 담당조직은 평균 4.47명으로 구성

K-SOX 조직의 소속

K-SOX 담당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CFO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책임자의 편재가 CFO 산하인 회사를 합치면 69.9%에 달함

-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한 73개사 중 44개사(60.3%)의 최고 책임자가 CFO로 나타남
- 그 외, 책임자의 편재가 CFO 산하인 회사가 7개사(9.6%)

감사(위원회) 감독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의 50%는 K-SOX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보유, 그 중 62.9%가 내부감사조직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62개사(50.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무조직 없이 감사(위원회)가 K-SOX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감독기능 취약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 중 내부감사조직이 39개사(62.9%)이며, 그 외 K-SOX 담당조직이 7개사(11.3%)로 뒤를 이음
- 감사(위원회)가 K-SOX 감독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을 보유한 회사는 10개사(16.1%)에 불과함

K-SOX 평가 대행

K-SOX 평가 업무 외주 비중은 42%, 이 중 다수는 경영진 평가 업무만을 담당

- K-SOX 운영 및 평가에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회사 52개사 중 34개사(65.4%)가 경영진의 평가만 대행함
- 나머지 18개사(34.6%)는 경영진 평가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 지원기능을 대행하며, 감사(위원회)의 평가만을 수행하는 회사는 없음

1. K-SOX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조직

“
 新외부감사법령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
 조직 운영체계를
 설계할 때에는
 회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함
 -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크게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리·운영 조직'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음
- 新외부감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조직에 관해서는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만을 규정하고, 조직의 형태나 독립성 등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운영실태를 보고함(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제4항)
 -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을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 이는 '회사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계는, 회사의 조직적·인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조직 운영 체계를 설계할 때에는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
 - 新외부감사법령 이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운영조직의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래 (2)에서 다루고 있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

“
 국내 법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를
 경영진의 평가와
 감사(위원회)의 평가
 두 단계로 요구한다.
 ”

- 국내 법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를 **경영진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新외부감사법령에서는 대표자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의 자체적인 평가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함(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18(경영진), 문단 93(감사(위원회)))

(3)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 조직

“ 내부의 객관성을 가진 인력 또는 외부인 등에 의한 독립적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

“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한다. ”

“ 핵심적인 통제를 독립성이 부족한 인원이 평가할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설계·운영 개념체계에서는 **독립적인 평가** 수행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평가는 **내부의 객관성을 가진 인력 또는 외부인** 등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53, 53.7, A97)
- 경영진은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함(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 설계·운영 적용기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전담부서나 내부감사부서**를 이용한다고 언급함(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64)
 - 평가·보고 적용기법에서는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7)
 - ✓ 그러나 고유위험과 통제절차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8)
 - ✓ 동일부서 내 다른 인원에 의한 평가나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의한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팀 등의 사후점검이나 표본추출 등의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음(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¹⁾(이하 '모범규준 적용 FAQ')에서는 평가자에 따른 독립성 수준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모범규준 적용 FAQ 30)

평가자 구분	독립성 (객관성) 수준	평가유형	평가 가능 여부	
			핵심통제 평가	비핵심통제 평가
통제운영자	매우 낮음	자가평가	불가	가능
통제운영자와 동일한 부서 인원	낮음	자가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통제운영자와 다른 부서 인원	낮음과 중간 사이	독립적인 평가	보완 조치 시 가능	가능
별도의 전담부서	중간 또는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외부 아웃소싱	높음	독립적인 평가	가능	가능

■ (주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019.6

(3)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 조직 (계속)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함(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이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절차와 운영실태 평가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그 방식은, 경영진의 평가 관련 자료를 주로 활용하되, **경영진의 평가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임
 - 이때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4) 내부감사 조직에 의한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평가 업무의 동시수행

“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역할도 동시에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인사 장치 및 평가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절차가 필수적이다.

”

- 특정 부서가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경우,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모범규준 적용 FAQ 43)
 - 대표적인 예로,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경영진으로부터 해당 평가조직이 독립적이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조직 책임자의 임면권이나 성과평가 권한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평가에 참가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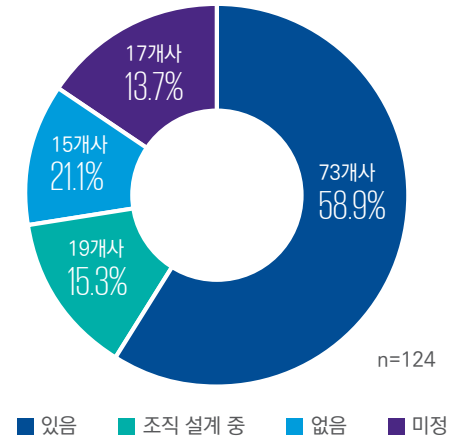
- 조사 대상 : 삼정 회계법인 감사 고객(자산 2조 이상), K-SOX 구축 고객(자산 5천억 이상(임박한 회사 포함) 또는 SEC 상장계열사)
- 기준 시기 : 2019년 7월 말 기준
- 조사 방식 : 삼정회계법인 내 해당 용역 담당자나 외부감사 담당자 대상 설문

2.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1) K-SOX 담당조직 유무

“
과반수의 회사가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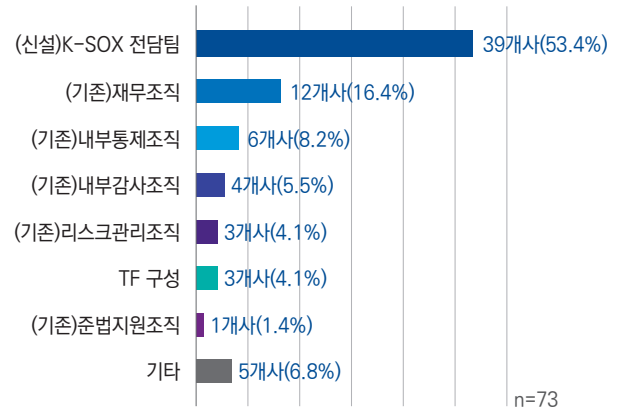
- **K-SOX 담당조직은 73개사(58.9%)가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 설계 중이라 응답한 회사는 19개사(15.3%)임
 - 15개사(12.1%)는 K-SOX 담당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17개사(13.7%)는 검토 전임
 - 미국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SOX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22%로 한국에 비해 낮음.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부서가 동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81%로 높기 때문임²⁾



(2) K-SOX 담당조직 유형

“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 중,
과반수 이상이
K-SOX 전담팀을
운용하고 있다.”

-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K-SOX 전담팀을 신설한 회사는 38개사(52.8%)로 가장 많으며**, 기존의 재무조직을 활용하는 회사가 12개사(16.7%)로 뒤를 이음
 - 기타에는 IR팀, 경영지원팀 등의 재무조직 이외의 기존 부서가 해당됨



(3) K-SOX 담당조직의 전담 여부

- K-SOX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73개사 중 54개사(74.0%)는 K-SOX 업무만을 전담함
 - 전담하지 않는 19개사(26.0%)의 경우, K-SOX 외에 공시, 세무, 대관, 자금, 리스크 관리, 준법, 내부감사 등의 업무를 겸임함

■ (주2) KPMG Global, "2018 Internal Controls Survey", 2019, 복수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4) K-SOX 담당조직의 인원 수

“ K-SOX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으로 구성된다. ”

- K-SOX 담당조직은 평균 4.5명으로 구성되며, 3명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20개사 (27.4%)로 가장 많음

인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계
해당 회사 수	6	15	20	10	15	2	1	1	1	2	73
비율	8.2%	20.5%	27.4%	13.7%	20.5%	2.7%	1.4%	1.4%	1.4%	2.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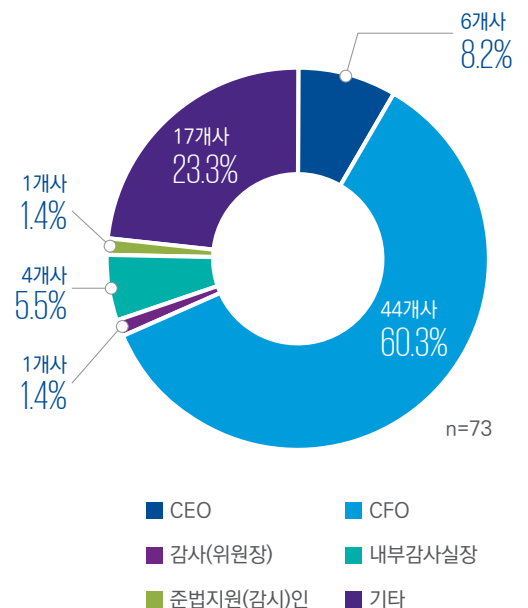
“ K-SOX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은 전담하지 않는 조직보다 평균적으로 구성원이 적었다. ”

- K-SOX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3.6명이며, 해당팀장 등의 보직 겸임으로, 이 중 K-SOX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3.1명으로 분석됨
- K-SOX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조직의 평균 인원 수는 6.8명으로, 그 중 K-SOX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0.4명으로 조사됨
 - K-SOX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조직은, 리스크관리, 공시, 세무 등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총 인원 수는 K-SOX 전담조직 보다 많음
 - 또한, K-SOX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19개사 중, K-SOX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는 13개사(68.4%)로 다수를 차지함

(5) K-SOX 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 지위

“ K-SOX 담당조직의 최고 책임자 지위는 CFO인 회사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

- K-SOX 담당조직의 최고 책임자 지위는 CFO가 44개사(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CEO인 경우도 6개사(8.2%)임
 - ‘기타’로 응답한 17개사 중 직급의 명칭에 ‘회계’ 또는 ‘재무’가 포함된 회사가 7개사로, CFO 지휘 계통의 팀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CFO 산하 조직인 K-SOX 담당 조직은 약 70%**임



3.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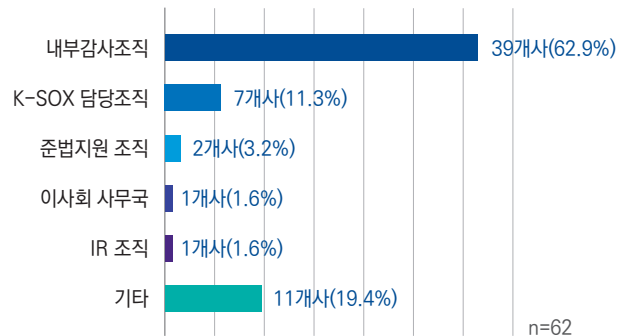
(1) 감사(위원회) K-SOX 감독지원조직 유무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4개사 중 62개사(50.0%)임
- 미국의 경우, **상장사의 내부감사조직 설치 및 동 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관리가 의무화³⁾** 되어, 모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라는 감독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감사(위원회) K-SOX 감독지원조직 유형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은 내부감사조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 ”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한 회사 중, 39개사(62.9%)는 내부감사조직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K-SOX 담당조직이 7개사(11.3%)로 뒤를 이음
 - '기타'에는 '윤리경영팀', '회계팀', '재무팀' 등이 해당됨



(3) 감사(위원회) K-SOX 감독지원조직의 인원 수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을 지원하는 조직은 평균 3.5명으로 구성되었다. ”

-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지원조직은 평균 3.5명으로 구성되며, 2명으로 이루어진 회사와 3명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각각 15개사(24.2%)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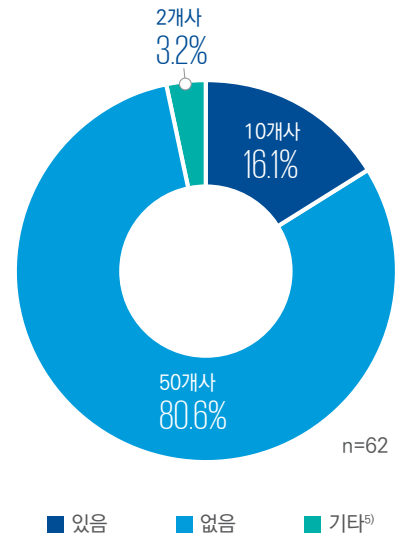
인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기타 ⁴⁾	계
해당 회사 수	4	15	15	9	4	1	2	2	1	1	8	62
비율	6.5%	24.2%	24.2%	14.5%	6.5%	1.6%	3.2%	3.2%	1.6%	1.6%	12.9%	100%

■ (주3) NYSE 303A.07 Audit Committee Additional Requirement (b) (c)
 (주4) 회사측 정보 미공개로 미확인

(4)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여부

“ 16.1%의 감사(위원회)가 K-SOX 감독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다. ”

- 감사(위원회)가 그들을 위한 감독지원조직에 대해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16.1%)에 불과함
- 이외의 50여개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 이는 감사(위원회)의 감독지원 조직이 독립적인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적격하지 않다는 것임.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직접 경영진 평가결과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해야 함



4. K-SOX 평가 아웃소싱

(1) K-SOX 평가업무의 외주 여부

“ K-SOX 운영 및 평가에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회사는 41.9%로 파악된다. ”

- K-SOX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회사는 52개사(41.9%)**로 파악됨
- 그 중 39개사(75.0%)는 내부 K-SOX 담당조직과 업무를 공동수행하며, 나머지 13개사(25.0%)는 외부전문가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

외부전문가 활용 여부	수	비율
외부전문가 활용	52	41.9%
K-SOX 담당조직과 공동수행	39	75.0%
외부전문가 단독수행	13	25.0%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음	66	53.2%
미정	6	4.8%
계	124	100%

- 2018년 미국의 외부전문가 활용 비율은 SOX가 최초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 9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SOX 적용 2년차 이후에는 내재화를 통해 41%로 낮아짐.⁶⁾ 한국의 시행 첫해인 올해 외부전문가 비율 41.9%는 미국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초기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주5) 회사측 정보 미공개로 미확인
 (주6) Protiviti, "2018 Benchmarking SOX Costs, Hours and Controls"

(2) K-SOX 평가의 외부전문가 활용 영역

“ 외부전문가는 주로 ‘경영진 평가’ 영역에서 활용되며, 감사(위원회)의 평가 업무만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회사는 없었다.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하다. ”

- K-SOX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52개사 중, 34개사(65.4%)는 ‘경영진 평가’ 업무만을 대행시키며, 18개사(34.6%)는 ‘경영진 평가 및 감사(위원회) 평가 업무’ 모두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함
 - 감사(위원회) 평가 업무만을 대행시키는 회사는 없음
- 특히 앞서 살펴본 공동수행 여부와 접목하여 살펴보면, K-SOX 담당조직과 공동수행할 경우에는 경영진 평가만 수행하는 회사가 28개사(71.8%)로 가장 많았고, 외부전문가가 단독수행할 경우에는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 모두 수행하는 회사가 7개사(53.8%)로 가장 많았음

유형		경영진 평가	감사(위원회) 평가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 모두 수행	계
K-SOX 담당조직과 공동수행	수	28	0	11	39
	비율	71.8%	0.0%	28.2%	100%
외부전문가 단독수행	수	6	0	7	13
	비율	46.2%	0.0%	53.8%	100%
계	수	34	0	18	52
	비율	65.4%	0.0%	34.6%	100%

-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위원회)의 K-SOX 감독지원조직이 미비하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3.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참조) **현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징후로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3)
 - 또한,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시활동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한다고 규정함

관련 근거	주요 내용
감사기준서 1100 문단 72	외부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함
감사기준서 1100 문단 A8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기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사가 효과적이지 않음’이 제시됨
감사기준서 1100 제정개요 문단 62	이때 ‘지배기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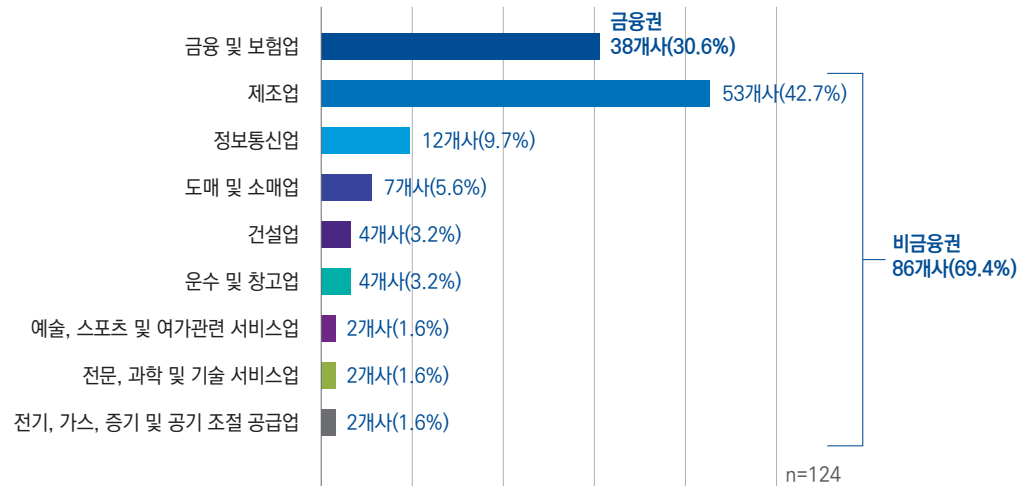
-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에서 SOX 감사 첫 해인 2004년에 ICOFR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 변형이 454건(15.9%)나타났으며, 그 중 감사(위원회) 감독기능 미흡 등 내부감사 관련 사유가 17건 발생함⁷⁾

■ (주7)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ourteen Year Review”, 2018.9

별첨. 조사 대상 기업 구성 및 업종별 주요 결과

(1) 업종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조사 대상의 업종을 분류한 결과 금융권 회사 38개사(30.6%), 비금융권 회사 86개사(69.4%)로 구성됨



(2) 자산 규모별

- 조사 대상을 2018년 말 자산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산 2조 이상 97개사(78.2%), 5천억 이상 2조 미만 21개사(16.9%), 5천억 미만 6개사(4.8%)로 구성됨
 - 2019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자산 2조 이상 회사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자산 5천억 이상 회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됨
 - 자산 5천억 미만 회사에는 연결 기준 ICOFR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미국 SEC 상장사의 계열사가 2개사(1.6%), 자산 4,500억 이상으로 5천억에 임박한 회사가 4개사(3.2%)임

자산규모별	금융권		비금융권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조 이상	34	89.5%	63	73.3%	97	78.2%
5천억 이상 2조 미만	2	5.3%	19	22.1%	21	16.9%
5천억 미만	2	5.3%	4	4.7%	6	4.8%
계	38	100%	86	100%	124	100%

(3) 상장 시장별

- 조사 대상은 KOSPI 상장사가 107개사(86.3%), KOSDAQ 상장사가 7개사(5.6%), 비상장사가 10개사(8.1%)임
- 비상장사는 연결 기준 ICOFR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미국 SEC 상장사의 계열사가 해당됨

상장시장	수	비율
KOSPI	107	86.3%
KOSDAQ	7	5.6%
비상장사	10	8.1%
계	124	100%

(4) 금융사 및 비금융사 별 주요 결과

- 설문 결과에 대한 금융사 여부에 따른 주요 설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영역	구분		금융사 (38개사)	비금융사 (86개사)
	항목	응답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유무	있음	23개사(60.5%)	50개사(58.1%)
		조직 설계 중	3개사(7.9%)	16개사(18.6%)
	유형	(신설)K-SOX 전담팀	11개사(47.8%)	28개사(56.0%)
	전담 여부	전담	13개사(56.5%)	41개사(82.0%)
	인원 수	인원 수	평균 4.6명	평균 4.4명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유무	있음	23개사(60.5%)	39개사(45.3%)
		유형	내부감사부서	19개사(82.6%)
	인원 수	인원 수	평균 3.2명	평균 3.7명
	인사권 및 성과평가권	보유	3개사(13.0%)	7개사(17.9%)
	보유 여부			
K-SOX 평가 아웃소싱	외주 여부	외부전문가	17개사(45.9%)	35개사(43.2%)
		활용		
	활용 영역	경영진 평가만	12개사(70.6%)	22개사(62.9%)
		감사위원회	0개사(0.0%)	0개사(0.0%)
		평가만	0개사(0.0%)	0개사(0.0%)
	두 평가 모두	5개사(29.4%)	13개사(37.1%)	

K-SOX TFT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T. +82 2 2112 0479
E. eunsuphan@kr.kpmg.com

허세봉 K-SOX TFT 리더, 부대표
T. +82 2 2112 0212
E. sebonghur@kr.kpmg.com

김민규 전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428
E. mingyukim@kr.kpmg.com

김유경 전무이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T. +82 2 2112 0639
E. youkyoungkim@kr.kpmg.com

이주한 전무이사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517
E. juhanlee@kr.kpmg.com

전용기 전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556
E. yjeon@kr.kpmg.com

한상현 전무이사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387
E. sanghyunhan@kr.kpmg.com

신광근 상무이사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T. +82 2 2112 0154
E. kwangkenshin@kr.kpmg.com

이성노 상무이사
금융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404
E. seongnolee@kr.kpmg.com

전원표 상무이사
조선, 건설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7634
E. wjeon@kr.kpmg.com

전현호 상무이사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638
E. hyunhojeon@kr.kpmg.com

정현 상무이사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334
E. heonjung@kr.kpmg.com

황구철 상무이사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T. +82 2 2112 0293
E. khwang@kr.kpmg.com

보고서 내용 관련 문의처

심정훈 상무이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T. +82 2 2112 0338
E. jshim@kr.kpmg.com

강병규 연구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T. +82 2 2112 3305
E. byoungkyoukang@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